

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유유건강생활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※ 주주확정 기준일 : 2023년 5월 12일

2023년 4월 26일

주식회사 유유제약
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94
대표이사 유 원 상, 박 노 용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대표이사 이 순 호